

□ 퇴직 연금제, 이대로는 안된다

1. 현황

- 2004년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5년 12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될 예정임
- 퇴직(기업) 연금제란,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적립한 금액을 일정 기간 이후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 연금 가입 근로자는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60~65세 이후는 국민연금 수령)
- 퇴직 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구분되며, 노사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이 일정한 공식에 의해 약속되어 있고, 이의 최종 지급 부담을 고용주가 떠안는 제도임
    - ※ 기업은 퇴직연금 부채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社外에 적립(현행 60%)해야 하며, 금리 등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의무 적립액은 달라질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업이 정기적으로 사외에 적립하여 운용한 뒤, 이의 원리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임
- 퇴직 연금제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노후 생계 보호에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퇴직 연금제의 도입은 현 퇴직금제로는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호가 어렵다는 국가의 판단, 즉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sup>1)</sup>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현 퇴직금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퇴직 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강제 제도임
  - 그러나, 현 제도는 퇴직금 관리가 실질적으로 기업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퇴직금 수급(受給) 보장이 불확실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 연봉제 도입, 빈번한 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금의 풍돈화’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1)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란 국가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는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부수적으로는, 사외(社外) 적립을 전제로 하는 퇴직 연금제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이 기대됨
  - 7~8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현행 퇴직금은 대부분 사내 적립되어 기업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 반면, 퇴직 연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외적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퇴직 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 적립금이 금융상품을 통해 사외에서 운용되면 자본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2. 문제점

- (제도 선택의 문제) DB, DC의 선택을 둘러싼 노사간 견해차가 큰 데다, 사외 적립으로의 이행 부담이 크기 때문에 퇴직 연금제를 선택하기 어려움. 선택형 제도이므로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현 퇴직금 제도는 유지됨
- 노동계는 운용 손실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확정기여형(DC)에 부정적임
  - (근본적 이유) 우리나라는 증시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확정기여형(DC) 퇴직금 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음
  - (기타) 노동자간 부익부 빈익빈 초래, 선택형 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퇴직금 제도의 실질적 소멸, 기금운용에 노동자 참여 봉쇄로 부실화 우려 등
- 기업은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확정급여형(DB) 도입에 부정적임
  - (근본적 이유) 국민연금과 기업연금(특히, DB)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부담 가중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경영에 차질 발생 우려
  - (기타) 위험자산 규정이 불명확하고 주식투자 한도(40%)도 낮아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곤란, 금융기관 도산시의 국가 보상 문제 공론화 필요
- 현행 퇴직금 사내적립 비율이 높고 사외적립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외 적립을 전제로 하는 퇴직 연금제도 도입에 부담이 발생함
  - 현재 우리나라 퇴직금의 사외적립 비율은 2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며, 부분적으로나마 사외적립을 하고 있는 기업은 40% 정도임<sup>2)</sup>. 특히, 중소기업 중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있는 회사는 2004년 말 현재 12.6%에 불과함<sup>3)</sup>

2) 노동연구원, 『퇴직금 제도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안』, 2002. 12.

3) 중소기업청,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조사』, 2004. 12.

- 확정기여형(DC)은 전액 사외적립을 전제로 하며, 확정급부형(DB)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부채)의 60% 이상을 사외적립해야 하는 제도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사내적립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자금 운용의 문제) 우리나라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은 데다, 장기채 부족 및 금리불안으로 연금 자산-부채간 **mismatching**이 우려됨. 즉, 퇴직연금제가 오히려 가계와 기업의 미래불안과 경기위축을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주식 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높으므로 퇴직 연금에 주식이 과다 포함될 경우 가계 및 기업의 미래 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가계 및 퇴직연금의 주식 편입 비중은 60% 내외로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사함. 퇴직연금 내 주식비중이 높아도 저항감 낮음

< 미국 가계 및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현황 : 2004년말 기준 >

(%)

	주식, 뮤추얼펀드	채권	단기 유동성 <sup>2)</sup>	기타
가계 부문 <sup>1)</sup>	61.6	8.7	21.9	7.8
민간 퇴직연금	64.5	16.0	6.3	13.2
공공 퇴직연금	58.1	34.2	2.3	5.4

자료 : FRB.

- 주 : 1) 가계 부문의 연금과 보험은 제외함.  
2) 단기유동성은 현금, 예금, MMF 등의 합계임.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가계 및 시중 펀드의 주식 비중이 매우 낮음. 향후 퇴직연금에 주식이 과다 포함되고 주가가 불안해질 경우 가계 소비 및 기업 고용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음

< 국내 개인 및 시중 펀드의 포트폴리오 현황 : 2004년말 기준 >

(%)

	주식	채권	단기 유동성 및 기타 <sup>2)</sup>
개인 부문 <sup>1)</sup>	9.3	12.2	78.5
시중 펀드	9.3	50.1	40.6

자료 : 한국은행.

- 주 : 1) 개인 부문의 연금과 보험은 제외함.  
2) 단기 유동성 및 기타는 현금, 예금, MMF 등의 합계임.

- 우리나라는 장기채가 부족하고 주가와 금리 변동성이 큼. 이는 DB의 경우 연금 자산과 부채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불안을 심화시킴
  - 2004년 말 국내 채권 잔액의 45%가 1년 미만 단기채이며, 국고채 중 10년 물 비중은 3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채가 부족함. 즉, 퇴직연금의 자산(3년 미만)과 부채(10년 이상) 사이에 심각한 mis-matching이 발생함
  - 따라서, 특히 DB의 경우, 당국이 연금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감독할 경우 연금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반대로 시가로 평가할 경우에는 연금 자산과 부채 가치의 급변동으로 기업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야기될 수 있음

### 3. 보완 과제

- (기본 방향) 일반적으로 기업은 DC를 선호하고 근로자는 DB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연금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DC형 연금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DB형 연금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양자의 혜택을 모두 받는 종업원도 증가하고 있음

< 퇴직 연금 수혜 근로자 비율<sup>1)</sup> >

(%)

		1999	2000	2003.3	2004.3
100인 미만 기업	DB	8	8	8	9
	DC	27	27	31	40
	수혜자 비율 <sup>2)</sup>	34	33	35	44
	공동 혜택(DB+DC)	(1)	(2)	(4)	(5)
100인 이상 기업	DB	37	33	33	35
	DC	46	46	51	68
	수혜자 비율 <sup>2)</sup>	64	65	65	77
	공동 혜택(DB+DC)	(9)	(14)	(19)	(26)
미국 내 연금 수혜자 비율		48	48	49	59

자료 : 미 노동부(National Compensation Survey).

주 : 1) 미국 내 노동력(파트타임 포함) 대비.

2) DB와 DC 수혜를 모두 받는 종업원이 존재하므로 퇴직 연금 수혜자 비율은 DB와 DC의 단순 합계보다 낮음.

- (노사 차원 : 상호 장점의 극대화) 기업은 확정급여형(DB) 연금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제도를 자기계발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함
- DB는, 기금운용에 따른 손실 부담 측면을 제외하면, 피고용자에 대한 통제권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임
  - 종업원의 임의 퇴직, 근무 태만이나 징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퇴직 연금의 삭감이나 미지급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 기강 확립에 유리함
  - 퇴직 연금의 안정적 지급은 기업의 형편에 크게 의존하므로 구조조정 시 노조의 협력을 얻기 용이해지거나, 노사간 협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큼
- 따라서 DB를 채택한 기업은 포인트 제도의 활용, 1대 1 노후관리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함
  -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퇴직 연금에 반영하는 포인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근로 의욕 고취, 우수 인력의 흡수 및 이직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음
  - 개별 면담이나 협의를 통해 퇴직 연금과 연계한 종업원의 노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 DC는, 노사간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연금의 안정적인 수령과 고용 안정에 유리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부채 평가액이 커지면 DB를 채택한 기업은 경영 부담 완화 및 주가 관리 차원에서 구조조정 유인이 발생함. 그러나, DC 채택 기업은 그런 부담이 없으므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에 유리할 수 있음
  - 기업 경영이 악화되더라도 적립된 퇴직 연금의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음
- 따라서 DC를 채택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기대 수익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자산 관리나 합리적인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함
  - DC는 운용 손실이 클 것이라 오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연금 설계가 가능함
  - 징계나 감봉 등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거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즉, DC는 DB보다 담보가치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므로, 안정적인 퇴직 자산 흐름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자산관리 계획이나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함

- (정책 차원 : 사외적립 비율 및 중도인출 요건 완화) DB를 채택한 기업의 사외적립 비율을 완화하고 DC 연금에 대한 중도 인출 요건을 완화함
  - 사외적립 비율 완화로 성장성 높은 기업이 DB를 통해 효율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권 안정 등을 도모하도록 함
    - DC를 선택하는 기업들은 사외적립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채를 조달하거나 주식 등을 발행해야 하나, 일부 사내 적립이 가능한 DB 선택 기업들은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저금리기에는 부채의 과대평가로 부채가 현실화될 때 회사계정상 특별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고금리기에는 특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채평가액의 감소로 최저 준비금도 감소함 (즉, 탄력성 있는 재무전략 수립 가능)
    - ※ 고성장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효율적 자금 운용과 경영권 안정 도모 가능

< 확정급여형(DB) 채택 기업의 손익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이익(손실) 발생 : 저금리 시 이득 가능성</li> <li>- 효율적 활용 가능 (자금조달 비용 완화)</li> <li>- 사외적립 자산 (최저 준비금) : 고금리 시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급여 채무 (확정적)</li> </ul>
--	--

- 따라서 정책 당국은 성장성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사외적립 의무화 비율을 현재(60%)보다 더 낮춤으로써 기업의 DB 채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DC의 경우 퇴직금 담보 제공과 중도 인출에 대한 요건, 한도를 완화하고 DB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 종업원이 DC를 선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DC의 경우 중도 인출 요건을 장기 실업, 자기계발 등으로 확대함
- (금융시장 차원 : 규제 완화 및 연금 보호 장치 마련)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 완화하되, 연금 부실화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함
  - 자본시장 발달 측면에서 퇴직 연금 운용 규제는 완화하는 게 바람직함
    -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대신, 금융기관 도산이나 연금 부실화에 대비한 보호(정부 개입) 장치 마련으로 가입자의 미래 불안을 완화함
    - 정부보증 공적기금 조성, 또는 연금부실화 시 개입 위한 법적장치 마련 등

노진호 연구위원 (3669-4031, jhno@hri.co.kr)